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제2020-202호, 2020. 09. 25. 제정

조달청 공고 제2023-229호, 2023. 06. 29. 개정

조달청 공고 제2023-247호, 2023. 07. 21. 개정

조달청 공고 제2025-134호, 2025. 03. 27. 개정

조달청 공고 제2026- 18호, 2026. 01. 0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용역 카탈로그 계약(이하 "카탈로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임차와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카탈로그"란 규격을 특정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 상품으로 수요기관이 상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기능이나 특징·조건·가격 등에 대하여 업체가 제공하는 양식을 말한다.
4. "카탈로그 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카탈로그로 계약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5. "용역"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에 속하는 수요물자 중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용역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8.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으로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g2b.go.kr)을 말한다.

9.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용역 카탈로그계약 체결한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용역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용역을 말한다.

11.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2.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13.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차기 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14.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란 「기술서비스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15.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6. "조사담당공무원"이란 카탈로그 계약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과약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6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17. "거래정지"란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 ·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18.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9. "검수"란 제18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조건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0.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조달청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 상대방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 성실도 등 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21.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카탈로그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 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22.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금액을 말한다.

제2장 계약 체결

제3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쇼핑몰 상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 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기간을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의 범위 내에서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사실이 없고,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계약 체결한 용역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일이 해당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인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에 대하여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계약 체결한 용역의 가격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면허,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각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할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금액보다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조달청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계약 관리

제1절 계약 변경

제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

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가 있거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납품요구가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계약해지 일로부터 1년간 해당 구매입찰공고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카탈로그 변경 등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발생 등 용역 카탈로그 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 체결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이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계약상대자의 의무

제10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

공고 등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9조에 따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구매입찰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이후 납품한 건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2항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업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어 해당 세부품명의 삭제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부품명을 삭제 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부품명의 삭제일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2조(직접생산 의무)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구역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이 조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이하 "상품정보"라 한다)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상품정보를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품정보를 등록한 계약상대자는 운영규정 제17조(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계약 품목에 대

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품질관리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계약 품목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사후관리과정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인증 검사 불합격 또는 용역 규격서 상에서 명시하는 자격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절 사후 점검 및 조치

제16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

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매입찰공고에 정해진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가격 및 실태조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규정 제33조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상품일반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3. 제14조(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5조(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 제2항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계약상대자의 카탈로그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

8.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에 따른 불공정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계약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9.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12. 품질·가격·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13. 그 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른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 1]와 같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거래정지 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제1항의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때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 기간을 적용한다.
-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불공정행위 등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기간 및 대상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별표 1]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며, 정지대상은 해당 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 세부품명으로, 해당 세부품명인 경우에는 일부 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단,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최대 거래정지 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검사담당공무원은 같은 규정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및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에 따라 거래정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19조(거래정지 등의 효력)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거래정지 등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2. 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3. 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4. 정지대상이 품목인 경우 해당 계약 품목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카탈로그 계약에 대하여 거래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해당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종전 카탈로그 계약에 대한 거래정지 등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남은 거래정지 등의 기간을 해당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한 경우에는 잔여 거래정지 등의 기간에서 해당 연계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1인만 남는 경우(단,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명 기준) : 종합쇼핑몰에 세부품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이 등록될 때까지(단,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명 기준)

2.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

3. 계절적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

4. 계약 상품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의 제·개정, 관련 인증·면허의 유

효기간 만료 또는 자진만납 등으로 일시적으로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단, 인증·면허 등이 취소된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5.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

6.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그 밖에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

7.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카탈로그 계약 품목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 해당 품목을 카탈로그 계약에서 제외하여 수정계약 체결할 때까지

8.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계약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

9. <삭 제>

10.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 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1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중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12. 계약 상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위협이 되는 요인이 해소됨이 확인될 때까지

13.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착오로 인하여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되거나 상품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단, 고의성이 없고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함): 품목삭제 또는 상품정보 수정 등 오류·착오 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제20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1인만 남는 경우(단,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명 기준): 종합쇼핑몰에 세부품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이 등록될 때까지(단, 업무처리규정 제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명 기준)
2.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
3. 계절적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
4. 계약 상품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의 제·개정, 관련 인증·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자진반납 등으로 일시적으로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단, 인증·면

허 등이 취소된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5.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

6.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그 밖에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시까지

7.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카탈로그 계약 품목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품목을 카탈로그 계약에서 제외하여 수정계약 체결할 때까지

8.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

9. <삭 제>

10.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11.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12. 계약 상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위협이 되는 요인이 해소됨이 확인될 때까지

13.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착오로 인하여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되거나 상품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단, 고의성이 없고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함): 품목삭제 또는 상품정보 수정 등 오류·착오 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14. 제16조 제2항에 따른 카탈로그계약의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개월(중간점검 신청 시 해제)<개정 20

26. 1. 8.>

[전문개정 2026. 1. 8.]

[시행일: 2026. 7. 1.] 제20조제14호

제21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상대자의 카탈로그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하고, 제26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카탈로그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특정업체 용역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카탈로그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카탈로그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조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카탈로그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한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기계약 여부 적합성 검토일 기준 해당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의 최근 3년간 용역 카탈로그 계약에 따른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경우
2. 카탈로그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담합, 안전도 위해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용역이 카탈로그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해당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카탈로그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세부품명. 다만,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카탈로그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나.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요구가 확인되고 계약종료일 이후 해당 납품요구 건을 납품 완료하거나 일부 납품(수요기관에서 발급한 일부 납품사실확인서 제출)한 경우

다. 차기 계약이 배제되어 경쟁이 성립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차질이 예상되는 용역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5. 제15조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6. 제17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7.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26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8.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9. 제7조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세부품명을 삭제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제25조(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한 세부품명의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기계약 여부 적합성 검토일 기준 해당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의 최근 3년간 용역 카탈로그 계약에 따른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경우
2. 카탈로그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담합, 안전도 위해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용역이 카탈로그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해당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카탈로그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세부품명. 다만,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카탈로그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나.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요구가 확인되고 계약종료일 이후 해당 납품요구 건을 납품 완료하거나 일부 납품(수요기관에서 발급한 일부 납품사실확인서 제출)한 경우
다. 차기 계약이 배제되어 경쟁이 성립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차질이 예상되는 용역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4. 계약종료일 기준 이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계약이행실적평가(계약종료일 이후 연장계약, 재계약, 차기계약 체결 전 확정된 계약이행실적평가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에서 6회 이내 기준으로 3회 이상 ‘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단, ‘미흡’ 등급을 1회 받은 경우에는 3개월, 2회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을 배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1. 8.>

5. 제15조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6. 제17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7.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26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8.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9. 제7조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세부품명을 삭제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전문개정 2026. 1. 8.]

[시행일: 2027년 상반기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공개일 이후] 제25조제2항제4호

제26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최근 2년간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불공정 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간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이행실적평가) ① 조달청장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등급을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적격성평가 대상자 선정, 종합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절 납품요구

제28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 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단, 최초 납품요구 시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품요구서 상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20일과 계약서의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 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조건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종합평가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카탈로그 계약이 체결된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 후 제28조에 따라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제30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업의 본질을 훼손하

지 않고, 납품요구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과업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 변경을 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카탈로그 계약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종합 평가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③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해서는 수정 납품요구 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카탈로그 계약 종합 평가를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제안가격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요구를 취소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30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자재, 장비 철수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관련 비용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달청의 심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납품기한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하거나, 수요기관 책임으로 착수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상호 동의한 경우 납품기한을 연기(납품기한 연장기간은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용역에 착수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 제>

- ③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조정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납품기한 연기 협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7>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취소 후 추후 새로운 납품요구를 희망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추후 납품을 희망하는 때에 제28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새로운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단가에 기존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20일과 계약서의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품기한 연기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설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구매입찰공고에서 본 용역 제공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요구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입찰공고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다.

- ③ 수요기관은 납품요구한 용역에 현장설치가 포함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8조에 따른 납품요구 건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 따른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 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를 면제하되,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고 확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⑥ <삭 제>

제34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과 관련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35조(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선금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완료 후 그 내용을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공채매입확인증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납품요구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여 검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 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 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수에 들어간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필요한 기간 초과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예시>

구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5항 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 규정
지체 일수 산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 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 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 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 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 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 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 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 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 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 통보 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 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 청한 경우 :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 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 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 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 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 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 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 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 를 받 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 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 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 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 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제4장 기타

제37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8조(이의신청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
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의견제출 기
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
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
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
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 등 관계법
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3.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4. 용역구매 규격서(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등 포함)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0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체결된 계약(계약서 기준)에 한해 적용한다.

부 칙<2023. 7. 21.>

이 규정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3. 27.>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1조제4항,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 : 2025년 9월 1일

부 칙<2026.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0조 제14호: 2026년 7월 1일

2. 제25조 제2항 제4호: 2027년 상반기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공개일 이후

【별표 1】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제18조 제1항 관련)

거래정지사유	거래정지	
	기간	대상
1.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상품정보 제공시까지 거래정지	-	-
2.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6월	세부품명
3.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체일수만큼 거래정지	-	세부품명
4. 제1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7일 이후에 통보한 경우	-	-
: 지체일수만큼 거래정지	-	세부품명
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1) 1차 위반	경고	업체
(2) 2차 위반	1월	세부품명
(3) 3차 위반 : 해당 계약 해지	-	계약
다. 품질검사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	-
: 품질검사 시까지 거래정지	-	세부품명
5.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중간점검 완료시 까지	-	-
	-	계약
6. 제1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 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1월	계약
	-	-
	-	-
7. 제1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6월	업체
8. 제1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 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 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1월	계약
	-	-
	-	-
9. 제18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 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1월	계약
	-	-
	-	-
10.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 하는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 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1월	계약
	-	-
	-	-
11.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6월	계약
12.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품의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	-
(1) 사망사고	12월	계약
(2) 부상사고	9월	계약
나. 그 밖에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경우	6월	계약
13.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 우선(의무)구매대상 물품	-	-
	2월	계약

등의 상품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 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1월	- 계약
---	---------	---------

※ [주]

- ① 위 표에서 “세부품명”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카탈로 그 계약 품목 중 계약조건 위반 사항과 관련된 품목과 세부품명이 동일한 품목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 ② 위 표에서 “계약”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카탈로그 계 약 품목 중 계약조건 위반 사항과 관련된 품목과 동일 계약서에 포 함된 품목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 ③ 위 표에서 “업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모든 카탈로그 계약 품목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별표 2】 불공정 행위 이력 평가 기준(제26조 제1항 관련)

불공정 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10
	가. 2억원 이상의 뇌물	5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3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2
담합	가.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10
	나. 담합에 참여한 자	5
허위서류 등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5
	나. 허위 서류, 위조·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3
	다.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변조, 그 밖에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3
안전사고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5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3
	다.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8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5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3

※ [주]

① 불공정 행위 이력 평가 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 계약종료일 기준
-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 다.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신인도 감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② 위(의) 불공정행위로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 또는 조치일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해당 처분 또는 조치일이 2018.1.1. 이후인 건에 한함)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동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동 처분 또는 조치가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